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1. 26.] [대통령령 제35019호, 2024. 11. 26., 타법개정]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85

제1조(목 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①「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 9. 18., 2013. 10. 22., 2017. 10. 17.>

1.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법률 제13983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생사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②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물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지도 및 감시
2. 먹는물 관련 영업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시

제2조의2(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법 제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먹는샘물의 취수정(取水井)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할 때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샘물의 수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

[본조신설 2013. 10. 22.]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 샘물의 부존(賦存) 특성 및 이용 실태
2. 샘물의 수질 특성 및 오염 상태
3. 해당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오염유발시설 설치 현황
4. 해당 지역의 지질 특성 및 지하수 이동속도

③ 시·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샘물보전구역의 명칭
2. 샘물보전구역의 소재지
3. 샘물보전구역의 면적
4.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연월일
5.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사유
6. 샘물보전구역의 범위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 지형도면

④ 법 제8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샘물보전구역의 명칭 변경
2.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의 소재지 변경
3. 샘물보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감소

[본조신설 2013. 10. 22.]

제2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법 제8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10. 22.]

제3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3. 22., 2014. 11. 28., 2018. 1. 16.>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 중 음료류에 해당하는 식품(이하 "음료류"라 한다)을 제조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2. 1일 취수능력 300톤 이상의 샘물등[원수(原水)의 일부를 음료류·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샘물등을 말한다. 이하 "기타샘물"이라 한다]을 개발하려는 자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취수능력을 산정할 때 샘물등을 이미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가 취수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취수능력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1. 3. 22.>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8. 9. 18., 2011. 3. 22.>

1. 샘물등의 개발의 위치 및 면적
2. 취수계획량
3. 샘물등의 용도

[제목개정 2011. 3. 22.]

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대상)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또는 상호
2. 대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본조신설 2011. 3. 22.]

[제목개정 2021. 7. 13.]

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고시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염지하수 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지정된 관리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염지하수 개발에 따른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환경적 피해 및 그 저감방안
2. 염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의 안전성

② 시·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기 전에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하 "지방환경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고, 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3. 11. 16.>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의 검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3. 11. 16.>

④ 시·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3. 11. 16.>

1. 관리구역의 명칭
2. 관리구역의 지정 일자
3. 관리구역의 위치, 면적 및 이를 표시한 도면
4.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취수할 수 있는 1일 염지하수량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 3. 22.]

제4조(환경영향조사대상) 법 제13조제1항 중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3. 22.>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에 환경영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3. 22.>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구물리, 응용지질, 수질환경의 3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대학에서 지구물리, 응용지질 및 수질환경 등 전문 분야의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2.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지하수 분야의 연구·개발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연구관 이상인 자
3.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4.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또는 해임할 수 있다.<신설 2016. 5. 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6. 5. 10.>

제6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2., 2017. 10. 17., 2024. 11. 26.>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및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또는 위생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
2. 정수기의 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품질경영산업기사 이상 또는 위생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품질관리 또는 품질경영 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수질환경, 위생, 품질관리, 품질경영 또는 정수기 제조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7조(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2., 2014. 11. 28., 2018. 1. 16.>

1. 법 제9조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취수한 샘물등
   가. 기타샘물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취수한 샘물등
   나. 음료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취수한 샘물등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라 한다)가 취수한 샘물등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가 수입한 먹는샘물등

②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 3. 22.>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제공하는 것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심사를 위하여 취수한 샘물등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빙서류를 매 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18.]

제8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금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2., 2014. 11. 28.>
1.제7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1,600원
나.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1,900원
다. 2012년 1월 1일부터: 1세제곱미터당 2,200원
2.제7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3,400원
나.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2,800원
다. 2012년 1월 1일부터: 1세제곱미터당 2,200원
[전문개정 2009. 12. 30.]

제9조 삭제 <2008. 9. 18.>

제10조 삭제 <2008. 9. 18.>

제11조 삭제 <2008. 9. 18.>

제12조(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①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산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는 분기별 수입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
[전문개정 2008. 9. 18.]

제12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등) ①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7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3. 22., 2014. 11. 28.>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징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9. 18.]

제12조의3(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샘물의 개발로 인하여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샘물보전구역의 지정·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시·도의 재정 사정
2. 해당 시·도의 샘물보전구역의 면적, 토지이용 현황 및 지질·수질 특성

[본조신설 2013. 10. 22.]

제13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6. 30., 2011. 3. 22.>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징수유예 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8.>

제13조의2(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 유예기간, 분할납부 금액, 납부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결정의 효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발생한다.

③ 신청인에게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 납부고지는 납부만기일 15일 전까지 납부고지서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8조에서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 2. 17.>

[본조신설 2008. 9. 18.]

제14조 삭제 <2008. 9. 18.>

제15조(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법 제3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3. 10. 22.>

1.「지하수법」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의 실시
2. 지하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
3. 법 제31조제9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에 대한 지원

제16조 삭제 <2014. 7. 21.>

제17조(광고의 제한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먹는샘물등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2., 2012. 7. 4.>

1. 먹는샘물등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2. 먹는샘물등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7. 4.>

③ 삭제<2012. 7. 4.>

제17조의2(회수·폐기처분 기준) 법 제4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21.>

1. 먹는샘물등이 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먹는샘물등의 용기에서「식품위생법」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에서 정한 용기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본조신설 2011. 3. 22.]

제17조의3(공표방법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위반내용을 나타내는 표제
2. 해당 제품명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명칭
3. 사업장 소재지
4. 위반내용(위반정도를 알 수 있도록 법령상의 기준과 대비하여야 한다)
5. 위반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일 및 유통기한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4. 7. 21.>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4. 7. 21.>

④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공표명령을 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1.>

[본조신설 2011. 3. 22.]

제18조(과징금의 납부)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2.>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한다.<개정 2011. 3. 22., 2023. 12. 12.>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

⑤ 삭제<2021. 9. 24.>

제19조(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 3. 22.>

제19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3. 22., 2014. 7. 21.>
1. 법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과 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
1의2. 법 제31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심의 및 그 결과의 통지
2. 법 제32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승인 등
3. 삭제<2014. 7. 21.>
②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8. 6. 13., 2008. 9. 18., 2011. 3. 22., 2021. 7. 13.>
1. 삭제<2011. 3. 22.>
2. 삭제<2011. 3. 22.>
3.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4. 삭제<2011. 3. 22.>
5. 삭제<2011. 3. 22.>
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검사·수거 또는 열람
6의2.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수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7. 법 제50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 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
9.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
③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8. 6. 13., 2008. 9. 18., 2011. 3. 22., 2021. 7. 13.>
1.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의 인정
1의2.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검사기관(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수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수질의 측정·분석에 관한 능력 평가
3. 법 제50조제1호에 따른 청문(제1호의2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것에 한한다)

4. 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정수기 품질검사기관과 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제외한 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

④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 교육의 일부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7. 13.]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2. 27.]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1. 3. 22.]

부칙 <제35019호,2024. 11. 26.>(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3.10.22>

과징금 산정기준(제19조 관련)

1. 적용기준

가.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기준 중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하인 경우만 해당하며, 법 제48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나.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다. 과징금 부과는 처분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과징금 부과권자가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금액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2. 1일 과징금 부과기준

가. 검사기관

기준금액(원/일)	매출금액(백만원/연)
180,000	100 이하
220,000	100 초과 120 이하
260,000	120 초과 140 이하
300,000	140 초과 200 이하
340,000	200 초과 280 이하
380,000	280 초과 380 이하
420,000	380 초과 500 이하
460,000	500 초과 680 이하
500,000	680 초과 840 이하
540,000	840 초과 1,020 이하
580,000	1,020 초과 1,220 이하
620,000	1,220 초과 1,440 이하
660,000	1,440 초과 1,680 이하
700,000	1,680 초과 1,940 이하
740,000	1,940 초과 2,220 이하
780,000	2,220 초과 2,520 이하
820,000	2,520 초과 2,840 이하
860,000	2,840 초과 3,180 이하
900,000	3,180 초과 3,540 이하
940,000	3,540 초과 3,920 이하
980,000	3,920 초과 4,320 이하
1,020,000	4,320 초과 4,740 이하

1,060,000	4,740 초과 5,000 이하
1,100,000	5,000 초과

나. 먹는물관련영업자

기준 금액 (원/일)	업종별 매출금액(백만원/연)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포함)	수처리제 제조업	정수기 제조업 (수입판매업 포함)
120,000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200,000	100 초과 120 이하	100 초과 120 이하	100 초과 150 이하
280,000	120 초과 200 이하	120 초과 170 이하	150 초과 350 이하
360,000	200 초과 340 이하	170 초과 250 이하	350 초과 700 이하
440,000	340 초과 540 이하	250 초과 360 이하	700 초과 1,200 이하
520,000	540 초과 800 이하	360 초과 500 이하	1,200 초과 1,850 이하
600,000	800 초과 1,120 이하	500 초과 670 이하	1,850 초과 2,650 이하
680,000	1,120 초과 1,500 이하	670 초과 870 이하	2,650 초과 3,600 이하
760,000	1,500 초과 1,940 이하	870 초과 1,100 이하	3,600 초과 4,700 이하
840,000	1,940 초과 2,440 이하	1,100 초과 1,360 이하	4,700 초과 5,950 이하
920,000	2,440 초과 3,000 이하	1,360 초과 1,650 이하	5,950 초과 7,350 이하
1,000,000	3,000 초과 3,620 이하	1,650 초과 1,970 이하	7,350 초과 8,900 이하
1,080,000	3,620 초과 4,300 이하	1,970 초과 2,320 이하	8,900 초과 10,600 이하
1,160,000	4,300 초과 5,040 이하	2,320 초과 2,700 이하	10,600 초과 12,450 이하
1,240,000	5,040 초과 5,840 이하	2,700 초과 3,110 이하	12,450 초과 14,450 이하
1,320,000	5,840 초과 6,700 이하	3,110 초과 3,550 이하	14,450 초과 16,600 이하
1,400,000	6,700 초과 7,620 이하	3,550 초과 4,020 이하	16,600 초과 18,900 이하
1,480,000	7,620 초과 8,600 이하	4,020 초과 4,520 이하	18,900 초과 21,350 이하
1,560,000	8,600 초과 9,640 이하	4,520 초과 5,050 이하	21,350 초과 23,950 이하
1,640,000	9,640 초과 10,740 이하	5,050 초과 6,200 이하	23,950 초과 26,700 이하
1,720,000	10,740 초과 11,900 이하	6,200 초과 6,820 이하	26,700 초과 29,600 이하
1,800,000	11,900 초과 13,120 이하	6,820 초과 7,470 이하	29,600 초과 32,650 이하
1,880,000	13,120 초과 14,400 이하	7,470 초과 8,150 이하	32,650 초과 35,850 이하
1,960,000	14,400 초과 15,740 이하	8,150 초과 8,860 이하	35,850 초과 39,200 이하
2,040,000	15,740 초과 18,600 이하	8,860 초과 9,600 이하	39,200 초과 42,700 이하
2,120,000	18,600 초과 20,000 이하	9,600 초과 10,000 이하	42,700 초과 50,000 이하
2,200,000	20,000 초과	10,000 초과	50,000 초과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7.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먹는물관련영업자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 공통사항				

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7호	50	70	100
나)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10호	80	90	100
2) 먹는샘물등 및 수처리제의 제조업자				
가)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5호	50	70	100
나)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6호	50	70	100
3) 정수기 제조업자				
가)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5호	50	70	100
나)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6호	50	70	100
다) 법 제44조에 따라 소비자 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1조제1항 제2호	150	230	300
4) 정수기 수입판매업자				
법 제44조에 따라 소비자 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1조제1항 제2호	150	230	300

나.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관리자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1호	50	70	100
2) 법 제8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관리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2호	50	70	100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7호	50	70	100
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10호	80	90	100

다.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를 받은 자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1호	50	70	100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7호	50	70	100

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1)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61조제1항 제1호	150	230	300
2) 법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2호의2	50	70	100

마.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법 제21조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3호	50	70	100

바.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단위: 만원)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4호	50	70	100

사. 먹는샘물등의 제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제조업자가 직접 제조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를 포함한다)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5호	50	70	100

아. 먹는샘물등·수처리제·정수기 용기 제조업자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6호	50	70	100

자. 검사기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7호	50	70	100
2) 법 제43조제1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8호	80	90	100

차.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관계인

(단위: 만원)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7호	50	70	100

카.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법 제43조제13항에 따른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9호	50	70	100